



◆ 미 수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영향평가 관련 심사절차 개정 추진

미 수은은 지원대상 거래가 통상법 201조에 의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특정 수출거래의 지원이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분석하는 '프로젝트 경제적 영향평가(Economic Impact Procedures)'의 개정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1968년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제정, 시행된 미 수은의 '프로젝트 경제적 영향 평가'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수 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1년 9월), 이번 개정 작업은 금년 6월, 미 의회가 미 수은의 업무시한 연장 및 지원한도 증액 등을 포함

하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시 동 절차의 개정을 명문화하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동 평가절차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주요 쟁점 사안의 세부 내용은 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결정의 적용 시기 및 기간을 비롯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업종, 품목의 적용 범위 및 평가대상 거래의 최소 규모 등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미국의 철강 산업 등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관련 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재원】